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42호 2025. 8. 21.(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5-1172호)
-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5-1175호)
- 예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5-1185호)
-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5-1186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예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예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2024. 1. 2.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 근거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나. 군수의 책무 (안 제2조)

○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 규정

다.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 제4조)

○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 및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에 대해 군수는 지도·감독 할 수 있음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hugepine0629@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사회복지과

3) 팩스 : 054-650-620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사회복지과(전화: 054-650-62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 (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예천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업무
3.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관내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망 확대와 전통시장 특별법에 근거한 보조사업 기회 제공을 위해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장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및 지정 사항을 완화하여 관내 상권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안 제7장)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서류 중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삭제 및 해당구역 지번과 면적 추가(안 제32조)
-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 30개 → 15개로 완화(안 제33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안 제31조, 제36조~제42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teamlab@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지역경제과

3) 팩스 : 054-650-60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지역경제과(전화 : 054-650-609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3조를 별지와 같이 대체한다.~~

~~제36조~제42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35조에 따른 예천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를 삭제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를 “제2호에”로, “제2호 또는 제3호의”를 “제2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3.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제33조 중 “30개”를 “15개”로 한다.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직권으로 또는 제32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u>경우</u> 제35조에 따른 예천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 ----- ----- <u>경우</u> - -----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u>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u>	제3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 ----- ----- ----- ----- ----- ---.---- <u>제2호에</u> ----- ----- ----- -- <u>제2호의</u>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u>	<u><삭 제></u>

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33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이어야 한다.

제3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

3.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2. (현행 제4호와 같음)

제33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

----- 15개 -----
-----.

<삭 제>

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예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3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삭 제>

제3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

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
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
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
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
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
· 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3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삭 제>

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
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
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
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
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
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
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삭 제>

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

<삭 제>

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
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
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4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삭 제>

예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도시숲 및 가로수 등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추가(안 제4조)

-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1명만 포함할 것

나. 가로수 조성·관리 행위자의 비용 미납 시 징수 근거 마련(안 제10조)

- 30일 기간 내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다.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2)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ysj3194@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산림녹지과

3) 팩스 : 054-650-63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산림녹지과(전화: 054-650-62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예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후단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업무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10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원인자에게 원인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원인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직접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과 같다.

⑩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고, 부담금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개정 2025. 00. 00.>

부담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9항관련)

원 인 자 부 담 금	1. 별목, 수간절단 등으로 조정적인 가치가 없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2.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3.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10% + 실작업비 4. 훼손자가 원상복구하는 경우 : 관리청의 사전 승인 후 시행 ※ 훼손자가 원상 복구할 경우에는 하자담보금 예치 5. 관리청에서 원상복구 할 경우 : 도급공사 설계비 + 식재비 6. 납부된 부담금은 세외수입으로 조치하여 복구관리비로 사용 7. 옮겨심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가로수 등을 옮겨심기하는 경우 ⇒ 도급공사비 예치 후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손상자부담금 적용 ※ 도급공사비 :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나. 관리청이 가로수 등을 옮겨심기하는 경우 ⇒ 도급공사비 + 이식비 8.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가로수 등을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동일 규격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단, 다른 법률에 의한 조경관련 협의 후 원인자가 같은 노선에 재조성 시는 동일 규격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와 재조성비의 차액 나. 관리청이 가로수 등을 제거하는 경우 ⇒ 동일 규격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제거비
비 고	○ 도급공사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재료비+ 노무비+ 제경비) 적용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비를 현금으로 하자담보 기간 동안 예치토록 조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받은 담보금을 환불 ○ 금액산정 시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 및 관내 도시공원 증대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분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 개정 :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조례

나. 조례 목적 변경 및 용어 정의 신설(안 제1조 ~ 제2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위임 사항 전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다. 점용료 납부 단위 세분화 및 면제 규정 신설 (안 제8조 ~ 제9조)

- 점용료 납부 단위를 일 단위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
- 국가, 군에서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점용료 면제 대상 근거 마련

라. 도시공원 시설의 사용 신청 및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규정 신설(안 제10조 ~ 제11조)

- 도시공원 사용 신청서 양식 추가(별지 제1호 ~ 제3호서식)
-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규정 및 금지 예외 사항 규정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ysj3194@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산림녹지과

3) 팩스 : 054-650-63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산림녹지과(전화: 054-650-62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를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2.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일괄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12
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공원 등의 사용)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도시공원시설 사용신청서 및 제2호, 제3호서식에 따른 행사계획서, 안전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의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신 설 2025. 00. 00.>

도시공원 시설 사용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공원의 종류 및 명칭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시설의 종류				
사용방법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신 설 2025. 00. 00.>

행사계획서

- 목적:
- 일시: 년 월 일
- 이용시간:
- 장소:
- 참여인원: 명
- 신청자 인적사항
 - 성명:
 - 주소:
 -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팩스번호
- 동원장비

위와 같이 행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도장)

안전계획서

○ 행사 전

- 전기 배전반 수시안전점검
- 무대 주변의 안전 여부 점검
- 관람석 주변의 안전 여부 점검
- 앰프, 스피커 등 전기장비의 안전 점검 및 관리

○ 행사 중

- 사회자가 관람객 관람 질서 및 시설물 안전에 대한 주의 방송 실시
- 음주, 흡연 금지 안내방송
- 특히 노인, 어린이, 유아들에 대한 안전에 유의
- 소음 민원이 제기 되지 않도록 각별히 음향기기 소리크기에 주의
- 공연시간을 엄수하고, 건전한 공연 질서를 유지하며 특히 관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함.

○ 행사 후

- 부대 시설 및 주변 정리 정돈 확인
- 전기 배전반 잠금 여부 확인
- 대기실 등의 잠금 여부 확인
- 발생된 쓰레기는 되가져 갈 것
-

위와 같이 안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도장)

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자치법규명)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2.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 관 부 서	예천군 산림녹지과	작 성 자	이름	윤성진
	부서장	정치영		직급	녹지주사보
	팀 장	임창현		연락처	054-650-6283
				이메일	ysj3194@korea.kr
3. 관계법령 • 고시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5호, 제41조, 제49조제2항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등	○ 피규제집단 : 도시공원 내 행사, 축제 등 사용하고자 하는 도시공원 사용 신청자 ○ 이해관계자 : 공원 인근 거주자 및 공원 사용 지역주민				
5. 규제 존속기한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별도의 존속기한 없음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신설(도시공원 사용 신청 양식 추가)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 도시공원 사용에 대한 신청 양식 신설 - 도시공원 내 행사, 축제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 행사계획서,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참고사항	해당없음				

2.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공원 등의 사용에 대한 신청 양식 신설(안 제10조, 별지 1~3호서식)

- 도시공원 내 행사, 축제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 행사계획서,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u>	<u>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u>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 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 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 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u>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 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 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
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
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를 원칙
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
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
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2.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현행과
같음)

② 제8조에 따른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일괄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
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
용월수/12

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
용일수/365

제9조(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

<신 설>	오 2. <u>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u> 3. <u>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제10조(시설의 사용) 법 제40조에 따라 <u>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2호서식에 의한 도시공원시설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신 설>	제11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u>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의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할 수 있다.</u>

[별지 제1호서식]<신 설 2025. 00. 00.>

도시공원 시설 사용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공원의 종류 및 명칭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사용시설의 종류				
사 용 방 법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신 설 2025. 00. 00.>

행사계획서

- 목적:
- 일시: 년 월 일
- 이용시간:
- 장소:
- 참여인원: 명
- 신청자 인적사항
 - 성명:
 - 주소:
 -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팩스번호
- 동원장비

위와 같이 행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도장)

안전계획서

○ 행사 전

- 전기 배전반 수시안전점검
- 무대 주변의 안전 여부 점검
- 관람석 주변의 안전 여부 점검
- 앰프, 스피커 등 전기장비의 안전 점검 및 관리

○ 행사 중

- 사회자가 관람객 관람 질서 및 시설물 안전에 대한 주의 방송 실시
- 음주, 흡연 금지 안내방송
- 특히 노인, 어린이, 유아들에 대한 안전에 유의
- 소음 민원이 제기 되지 않도록 각별히 음향기기 소리크기에 주의
- 공연시간을 엄수하고, 건전한 공연 질서를 유지하며 특히 관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함.

○ 행사 후

- 무대 시설 및 주변 정리 정돈 확인
- 전기 배전반 잠금 여부 확인
- 대기실 등의 잠금 여부 확인
- 발생된 쓰레기는 되가져 갈 것
-

위와 같이 안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도장)

3.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도시공원 사용에 대한 신청 양식 신설
 - 경북도청 신도시 내 도시공원의 증대에 따라 각종 행사 및 축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기준 필요

나. 규제의 신설(또는 강화)의 필요성

- 도시공원 사용에 대한 신청서, 계획서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공원 관리가 필요함. 또한 이를 통해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 및 주변 거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다. 대안검토

- 현행유지 : 기존 규제로는 증가하는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이에 따른 기준이 필요함

라. 기대효과

- 도시공원 사용을 위한 기준 확립
- 행사 및 축제 시 안전에 대한 명확한 인식 증대

4. 규제의 비용·편익의 비교 분석

가. 규제에 따른 소요비용

- 해당없음

나. 규제에 따른 경제·사회적 편익 분석

- 도시공원 내 사용(행사, 축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무분별한 사용, 안전문제, 민원 유발 가능성이 존재함. 이에 따라 신청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공원 관리를 할 수 있고 이용

객 및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음.

- 민원 대응, 사고 처리 등 사후 행정 비용이 감소하고 행사·축제의 질적 개선으로 관광 유입이 증가할 수 있고, 계획서 제출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소음·혼잡 등의 사전 조율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경제적 편익 및 사회적 편익은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5.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신청서 및 계획서와 같은 기준 도입으로 적용 대상의 명확성, 규제 기준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이라는 방식으로 객관성과 명료성이 뚜렷하므로 예천군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규제함.

6. 결론

- 현행 도시공원 사용 기준의 미비점 및 체계적인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함
 - 신청서 및 계획서를 통해 공원 관리의 일관성·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재로서의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